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53
----------	---------

제안년월일 : 2024년 11월 2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과 산출근거를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맞춰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 39,172백만원을 예산안에 맞춰 30,641,900천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산출근거를 수정함.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요내용 중 출연금액 및 산출근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출연금액(안) : 30,641,900천원

2)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52,262,654	100%	계	52,262,654	100%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가. 출연금	30,641,900	58.6%	가. 연구사업	6,202,915	11.9%
나. 자체수입	14,020,754	26.8%	1)연구과제 수행	6,107,375	11.7%
1)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2.3%	2)연구실 운영	95,540	0.2%
2)출판물 등 판매수입	30,000	0.1%	나. 경영사업	6,738,536	12.9%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	500,000	1.0%	다. 인건비	31,621,203	60.5%
4)이월금	1,374,443	2.6%	라. 예비비	100,000	0.2%
5)내부유보금	10,938,311	20.9%			
2. 수탁 협약 사업계정	7,600,000	14.5%	2. 수탁 협약 사업계정	7,600,000	14.5%

수정안 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1. 제안이유 가. ~ 나. (생략)						1. 제안이유 가. ~ 나. (동의안과 같음)					
2. 주요내용 가. ~ 라. (생략)						2. 주요내용 가. ~ 라. (동의안과 같음)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출연금액(안) : <u>39,172백만원</u> 2) 산출근거(안)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출연금액(안) : <u>30,641,900천원</u> 2) 산출근거(안)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60,792,924	100%	계	60,792,924	100%	계	52,262,654	100%	계	52,262,654	100%
1. 일반사업계정	53,192,924	87.5%	1. 일반사업계정	53,192,924	87.5%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가. 출연금	39,172,170	64.4%	가. 연구사업	6,976,275	11.5%	가. 출연금	30,641,900	58.6%	가. 연구사업	6,202,915	11.9%
나. 자체수입	14,020,754	23.1%	1) 연구과제 수행	6,887,060	11.3%	나. 자체수입	14,020,754	26.8%	1) 연구과제 수행	7,447,760	11.7%
1) 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1.9%	2) 연구실 운영	89,215	0.1%	1) 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2.3%	2) 연구실 운영	95,140	0.2%
2) 출판물 등 판매수입	40,000	0.1%	나. 경영사업	12,317,546	20.3%	2) 출판물 등 판매수입	30,000	0.1%	나. 경영사업	7,853,832	12.9%
3)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	1,000,000	1.6%	다. 인건비	33,699,103	55.4%	3)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	500,000	1.0%	다. 인건비	31,621,203	60.5%
4) 이월금	1,712,340	2.8%	라. 예비비	200,000	0.3%	4) 이월금	1,374,443	2.6%	라. 예비비	100,000	0.2%
5) 내부유보금	10,090,414	16.6%				5) 내부유보금	10,938,311	20.9%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2.5%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2.5%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4.5%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4.5%
3. 참고사항 가. ~ 다. (생략)						3. 참고사항 가. ~ 다. (동의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53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연 사무명 : 서울연구원 출연
-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2) 추진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교통, 안전, 경제, 복지,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다. 출연 사무내용

-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라. 출연 기관 개요

1) 연 혁

- '92. 1. 15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정
- '92. 7. 1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
- '92. 9. 23 초대 최상철 원장 취임
- '92. 10. 1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개원
- '03. 1. 27 현 청사(서초동 인재개발원 내) 이전
- '12. 7. 26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17. 9. 21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23. 11. 1 통합연구원 출범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 '24. 2. 23 제18대 오균 원장 취임

2) 소재지

- 본 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역삼별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05 YK빌딩
- 정동별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10

3) 위치도



4) 규 모

- 조 직 : 원장, 부원장, 감사실, 3본부, 11실, 5센터
- 인 력 : 정원 301명 / 현원 302명

(2024년 7월 22일,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연구직	일반직	공무직
정원	301	1	213	71	16
현원	302	1	214	71	16
과부족	1	-	1	-	-

5) 시설현황

- 본 관 : 지상5층~지하1층 / 연면적 8,467.83m²
 - ▶ 시유재산 무상사용 : '21.12.27. ~ '26.12.26.(5년)
- 정동 별관 : 지상4층~지하1층 / 연면적 1,793.87m²
 - ▶ 시유재산 무상사용 : '24.3.22. ~ '29.3.21.(5년)
- 역삼 별관 : 지상8층(1,006.61m²), 지상1층(110.08m²)
 - ▶ 민간건물 임차 : '21.5.1. ~ '26.4.30.(5년)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출연금액(안) : 30,641,900천원

2)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52,262,654	100%	계	52,262,654	100%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가. 출연금	30,641,900	58.6	가. 연구사업	6,202,915	11.9
나. 자체수입	14,020,754	26.8	1)연구과제 수행	6,107,375	11.7
1)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2.3	2)연구실 운영	95,540	0.2
2)출판물 등 판매수입	30,000	0.1	나. 경영사업	6,738,536	12.9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	500,000	1.0	다. 인건비	31,621,203	60.5
4)이월금	1,374,443	2.6	라. 예비비	100,000	0.2
5)내부유보금	10,938,311	20.9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4.5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4.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